

등록번호	건강도시과-3424
등록일자	2016.2.29.
결재일자	2016.2.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건기획팀장	건강도시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강경식	임용운	임택	박희균	황치영	02/29 최창식
협조	인사팀장 총무과장	문영일 김종석			

의원 면직 및 결원예정에 따른   
**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[의사] 채용계획**



보 건 소  
건강도시과

**의원 면직 및 결원예정에 따른** ▶  
**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(의사) 채용계획**

2016.2.29.자 계약만료에 따라 유능한 임기제 지방공무원을 채용 하여  
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**I 관련근거**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5751호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)

**II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**

채용 분야	채용 직급	채용 인원	채용 기간	담당업무	채용사유
의사 (전임) ※ 정산파 전문의	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	1명	1년	지역기반형 공공 정신보건사업수행 - 영유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- 만성질환 및 신체질환을 가진 주민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- 지역내 직장인 정신건강관리서비스 유사시 보건소 1차 진료 등	계약기간 만료 (2016.2.29.자)에 따른 결원 보충

※ 채용(계약)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함

※ 근무지 : 중구 보건소(중림동 보건분소 포함)

**III 응시자격**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(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일)

※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., 2013.8.6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● **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**

채용예정 직        급	채용 자격기준	비 고
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 (5급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2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3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5.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6.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7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</li> <li>8.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 <p>①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소지자</p>	

- 주소지 · 성별 · 연령 : 제한 없음  
-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#### IV 연 봉 액
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· 자격 ·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

## V 시험방법

- 1차시험 : 서류전형
- 2차시험 : 면접시험

## VI 세부추진계획

- 인사위원회 심의
  - 사업의 필요성,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, 자격 및 채용조건 등 심의(신규채용 결정)
- 채용공고 -----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후
  - 기 간 : 10일간
  - 방 법 :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공고
  - 공고문 : 붙임 참조
- 응시원접수 ----- 공고 후 3일간
-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: 【1차 서류전형】
- 채용예정 직급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심사 후 결정  
【2차 면접시험】
-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구성 : 5인 이상(외부위원 2/3인 이상)
-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결정
  - 면접대상 : 접수자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
  - 면접위원 :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
  - 면접방법 : 개인면접(면접대상자 1명씩 면접시험에 참가)
- 신원조회(조사) 및 비위면직 사실조회 ----- 임용 후보자 등록 즉시
- 신규임용 : 1명-2016. 3월중